

의안번호	2201701
의 퇴 인	송언석 의원
회 답 일	2024.7.15.
추계번호	24E1947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 3년 유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법률 제17757호 부칙 제1조(시행일) 및 제5조(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용례) 등	-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 3년 유예 -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3년 유예함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법률 제17757호 부칙 제1조(시행일) 및 제5조(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용례) 등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는 것으로서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- 현행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·대여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¹⁾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,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예정

1) 가상자산소득금액 =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인한 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(취득가액+부대비용)

[표 1] 가상자산 과세체계

	현행	개정안
과세시점	2025년 1월 1일	2028년 1월 1일
과세방법	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	좌 동
기본공제	250만원	좌 동
세율	20%	좌 동
납부	차년도 5월 신고·납부	좌 동

□ 개정안에 따라 2028년부터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 소득세 변화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가상자산 소득 금액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, 현시점에는 가상자산소득 관련 과세 사례가 없어 관련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추계가 불가능함

- 2023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²⁾³⁾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43.6조원, 2023년 하반기(6개월간) 일평균 거래금액은 3.6조원이며, 전체 등록계정수는 총 1,816만개로 조사되었으나 동 자료만으로는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이 어려움

[표 2]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(2023년 12월 말 기준)

(단위: 개, 조원, 명)

거래소	가상자산수	시가총액	등록계정수	실제 이용자수
원화마켓	925	43.1	17,897,016	6,401,325
코인마켓	408	0.46	264,892	47,487
합계	1,333	43.6	18,161,908	6,448,812

자료: 금융위원회, 「'23년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」, 2024.5.

2) 금융위원회, 「'23년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」, 2024.5.

3) 2023년 12월 말 기준 29개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한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집계한 자료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어수진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어수진	02-6788-4745	sjeo1993@assembly.go.kr